

「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(2차)」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2023년 4월 1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
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

## 「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(2차) 공모 공고

### 1.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
- (사업목적)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를 집중 보급하고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브랜드 사업 추진
- (사업예산) 약 500억 규모 (급속 : 350억, 완속 : 150억)
  - ※ 1차 선정사업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은 늘어날 수 있음
  - ※ 평가결과 및 접수물량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개수,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
- (사업기간) 사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 완료

○ (사업유형)

- ① 지역 내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, 민간투자, 충전 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사업
- ② 전기용량 및 주차면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등을 고려한 충전시설 (전력분배형 등) 설치사업

**<우선 선정 대상>**

-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, 졸음쉼터 내 설치하거나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하는 사업
-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(K-EV100) 및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-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 차량 전환(어린이 통학차량, 택배차량)을 위해 전용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- 내연이륜차 규제지역 시범 운영 지자체 또는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-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(KS 표준)에 맞는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
□ **지원대상**

- 지방자치단체(광역 또는 기초), 민간사업자(투자사업, 기업),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공동 컨소시엄
  - 「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(급속, 완속)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」 또는 「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」에 명시된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갖춘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(컨소시엄, 5개사 이내)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,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
  -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. 다만,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“2023년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”을 충족하면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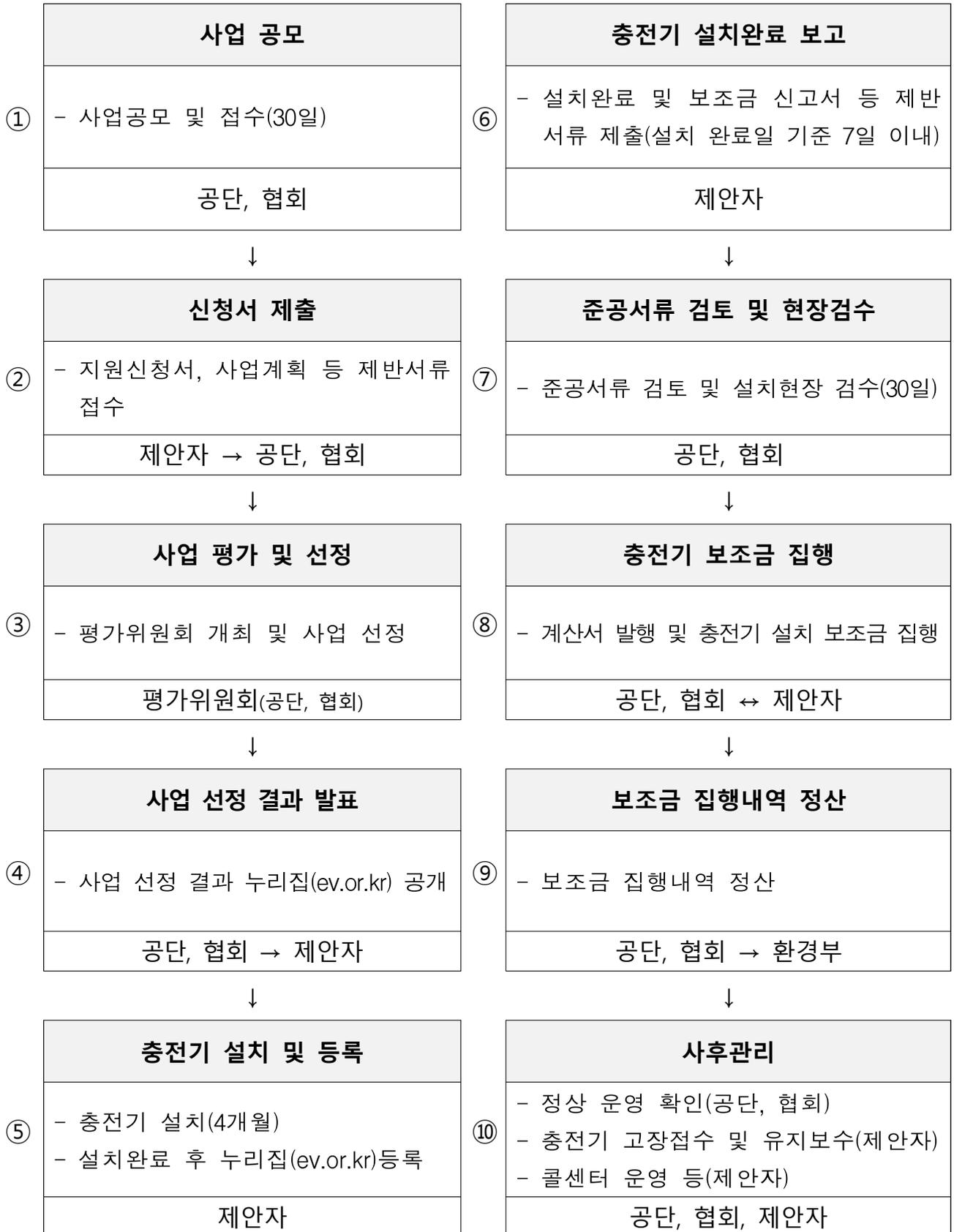
- 1)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(전기자동차충전사업)을 등록한 자
- 2)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, 운영, 유지보수(정기점검, 긴급출동, 고장수리 등)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·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- 3) 충전기 이용 현황(사용량, 회원관리, 고장접수 등)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,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(www.ev.or.kr)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
  - ※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
- 4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및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(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-280호)」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,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
- 5)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(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)에 대하여 OCA(Open Charge Alliance)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.6(OCPP 1.6)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
- 6)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
  - ※ 제안자가 충전소 설치 부지소유자가 아닌 경우,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부지 제공에 관한 협약·계약서 제출
- 7)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‘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’ 협약을 체결한 자
  - ※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체계 협약서 제출

## 2.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및 기준

- (지원한도) 한 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
  - ※ 다만,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지원 수량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(지원조건) 충전시설은 설치 후 5년 동안 의무운영을 원칙으로 함
- (지급방식) 보조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며, 1차 보조금(선급금)은 배정보조금의 70% 범위 이내에서 지급
  - ※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증권발급 조건 별도 안내)
- (지원금액) 「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(급속, 완속)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」에 따른다.

### 3. 추진절차 및 평가

#### ○ 추진 절차



\* 평가·선정·검수 일정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
## 4. 신청방법

- (제출일) 2023년 4월 1일(토) ~ 4월 30일(일) 24:00까지
- (제출방법) 이메일(evbrand@aea.or.kr, goev@keco.or.kr) 제출\*을 원칙하며 아래에 따라 반드시 해당하는 하나의 기관에만 제출
  - ① (상용차)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 그린카TF팀
    - 그린카TF팀 (070-4027-1262(0544), evbrand@aea.or.kr)
  - ② (그 외 사업)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 TF팀
    -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 TF팀 (032-590-9906(9905), goev@keco.or.kr)

\* 제출서류 목록은 공모지침 13페이지 리스트 참조

## 5.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

- 공모 지침(붙임) 참고

## 6. 유의사항

-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이메일 발송 완료한 건만 유효하며, 이후 발송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선정 결과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을 통해 공지하며, 점수 및 배정보증금 등 공개하지 않고 사업명만 표기하여 공지함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문의처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내용에 따라 한국환경공단(goev@keco.or.kr)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(evbrand@aea.or.kr) 이메일 문의

## 7. 향후일정

- ('23.4.1~4.30) 사업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
- ('23.5.16~5.17) 서면 평가 및 사업 선정
- ('23.5.18) 최종 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
- ('23.5.19~)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신청 접수
- ('23.9.18~) 제안사 충전시설 운영·관리

**【붙임】**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